

# 지속가능한 조달 가이드라인

Daifuku Co., Ltd.

초판 제정일: 2017 년 4 월

제 2 판 : 2024 년 1 월

# 목차

<전문> .....	2
<운용> .....	2
<준수 상황의 확인·보고와 시정 조치> .....	3
1. 법령 준수 .....	4
2. 노동 기준 .....	5
3. 안전 위생 .....	8
4. 품질·안전성 .....	10
5. 책임 있는 광물 조달 .....	10
6. 환경 .....	11
7. 정보 보안 .....	13
8. 업무연속성 계획 .....	14
9.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	14
10. 적절한 정보 공개 .....	14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처> .....	15
<용어집> .....	16

## <전문>

다이후쿠 그룹은 사훈 '일신(日新)', 경영이념 '사물을 움직여, 마음을 움직인다'에 준거하여 그룹 행동 규범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1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현재화하여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활동에 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사 그룹은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방지' 등 4 가지 분야 10 개 원칙으로 구성되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2'에 찬동하고, ESG\*3(환경·사회·지배구조)와 SDGs\*4(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그룹의 활동만으로는 여러 방면에 걸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사 그룹 제품의 생산, 공사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거래처 여러분(이하 '거래처'라 합니다)의 협조가 있어야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법령 준수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식된 규범과 원칙 등을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거래처는 물론, 당사 그룹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거래처를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나타낸 '지속가능한 조달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책정하였습니다. 거래처는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하여 우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용>

- 거래처는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규정류를 책정하고 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이후쿠 그룹은 거래처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상황을 거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전혀 없거나, 중대한 위반 사례가 다이후쿠 그룹에 보고되지 않는 등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거래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준수 상황의 확인·보고와 시정 조치>

- 다이후쿠 그룹은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에 설문조사나 감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설문조사와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처의 공급망(위탁처·재위탁처)에 대해서도 본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처·재위탁처에는 본 가이드라인의 취지·내용 등을 주지하고 준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는 다이후쿠 그룹이 지정하는 제삼자가 실시하거나 사전 통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는 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생산 현장·사택·식당·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나 기록 열람 및 관련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이후쿠 그룹은 감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거래처의 협조를 받아 재위탁처에도 동일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는 설문조사나 현장 감사를 통해 특정된 위반 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하는 시정 조치 계획을 작성·실시하고, 그 진척 상황 및 결과를 다이후쿠 그룹에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1. 법령 준수

### 1.1 법 규제 등의 준수

- 각 국가·지역의 법령 및 규제 준수와 국제 행동규범\*5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사업 활동을 하는 국가·지역의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고, 국제 행동규범을 존중해 주십시오.
- 법령 준수를 위한 방침과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 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한 창구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창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과 더불어 부정행위의 개선을 위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 1.2 공정한 거래

- 공정, 투명,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해설】

- 사적독점\*6이나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카르텔\*7, 입찰 담합\*8 등)를 하지 마십시오.
- 우월적 지위를 남용\*9하여 거래를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불공정 거래 방법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 기업의 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을 손상하고 개인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

### 1.3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근절

- 시민사회의 질서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10와의 관계를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 1.4 지식재산권\*11의 보호

- 다이후쿠 그룹 및 제삼자의 지식재산권을 부당하게 이용·침해하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 1.5 부패 행위의 금지

- 고객, 구매처 및 기타 거래관계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부패 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설】**

- 사업 활동을 하는 국가·지역의 정치가 및 공무원과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뇌물 공여 및 위법 헌금 등을 하지 마십시오.
- 거래 관계자가 정치가 및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행위, 공갈, 킥백<sup>\*12</sup>의 지불 등 부정한 이익<sup>\*13</sup>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권유하지 마십시오.

**1.6 노동자와의 소통 및 상담 창구**

- 노동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노동자가 의견이나 우려사항을 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십시오.

**【해설】**

- 노동자가 안심하고 의견이나 우려사항을 표명할 수 있도록 소통 촉진 및 건전한 조직 풍토의 유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 필요에 따라 내부 고발 및 상담 등을 접수하는 창구 설치 등 부정의 억제·발견에 관한 체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동 기준**

**2.1 인권 존중과 차별 배제**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sup>\*14</sup>을 옹호하고,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을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해설】**

-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해 주십시오.
- 임금, 승진, 보수, 퇴직, 교육, 채용, 고용과 관련하여 국적, 인종, 민족, 신조, 출신지, 정치적 견해, 피부색, 언어, 종교, 사상, 성별, 연령, 장애,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재산,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철폐해 주십시오.
- 사업 활동을 하는 국가·지역의 전통과 관습, 노동자의 종교적인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해 주십시오. 특히 노동자가 종교상의 관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사의 의사 결정이나 사업 활동이 제삼자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여하거나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 **2.2 학대 및 괴롭힘의 배제**

- 모든 학대와 괴롭힘을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신체적, 정신적인 학대, 성적 괴롭힘, 폭언에 의한 비인도적인 대우 등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및 건전한 직장 환경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징계 방침과 대응 절차를 정하고 노동자에게 주지하여 공정하게 운용해 주십시오.

## **2.3 강제 노동\*15의 철폐**

-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배제하고 가담하지 마십시오.

### **【해설】**

- 강제, 강요, 또는 구속에 의한 노예적 노동 등 처벌 위협하에서 강요되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은 일체 허용하지 마십시오.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강제 노동은 일절 금지해 주십시오.
- 수수료나 공탁금 지불, 신분증 예탁 강요 등 노동자의 이직 및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 인재 알선업자와 인재 파견업자 등의 제삼자를 통해 노동자를 채용·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삼자에게도 본 항목의 준수를 요구해 주십시오.

## **2.4 아동 노동의 철폐**

-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배제하고 가담하지 마십시오.

### **【해설】**

- 15 세 의무 교육을 수료하는 연령, 또는 해당 국가·지역에서 법령이 정한 고용 최저 연령 가운데 가장 높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을 노동에 종사시키지 마십시오.
- 18 세 미만의 사람을 건강, 안전, 또는 도덕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야근과 잔업을 포함합니다.
- 인재 알선업자와 인재 파견업자 등 제삼자를 통해 노동자를 채용·고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삼자에게도 본 항목의 준수를 요구해 주십시오.

## **2.5 적절한 노동시간의 관리**

-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적절한 휴일·휴가의 부여 및 노무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해설】**

- 매일 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파악하는 관리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 표준 노동시간(잔업을 제외한 소정의 근무시간)은 주 48 시간 또는 법령이 정한 제한 시간 가운데 긴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노동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24 시간 연속된 휴일을 부여해 주십시오.
- 노동자에게는 법령으로 정해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 주십시오.

## **2.6 임금과 복리후생**

-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할증 수당 등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제를 준수하고, 부당하게 감액하지 마십시오.**

### **【해설】**

- 적용되는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 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을 노동자와 체결해 주십시오.
- 모든 노동자에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계약서 또는 고용 조건을 명시한 통지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십시오.
- 보수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법정 급부 및 임금 공제에 관한 법령이 포함됩니다.
- 임금 지급 기일에는 명료한 급여 명세서를 제공해 주십시오.
- 임금은 적용되는 법령이 정하는 최저 임금, 또는 업계의 일반적인 임금 가운데 높은 금액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그 지역에서 최저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생활임금\*16) 이상의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현지 법령이 정한 할증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할증 임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 부당한 임금 공제는 하지 마십시오. 징계 처분으로 인한 임금 공제는 부당한 임금 공제로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2.7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존중**

- **노동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 등을 결성하여 가입할 자유를 존중해 주십시오.**
-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노동자가 법령에 따라 노동 환경이나 임금 수준 등의 노사간 협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을 할 권리 및 항의 행동을 할 권리를 존중해 주십시오.
- 노동자나 그 대표자가 보복, 협박,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노동 조건과 경영 관행에 관하여 경영진과 자발적으로 협의 및 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2.8 외국인과 이주 노동자\*17 의 존중

-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공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 【해설】

-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고용 조건 투명성과 양호한 노동 조건·생활 조건을 확보해 주십시오.
-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해 주십시오.
-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에게 공적인 신분증이나 노동 허가증의 예탁을 요구하거나, 고용에 관한 수수료나 예탁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당사 그룹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18’에 따라 사업 활동 시의 인권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한 ‘다이후쿠 그룹 인권 방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거래처와 인권 존중 활동을 협동하여 추진해 가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이후쿠 그룹 인권방침’ 링크](#)

## 3. 안전 위생

### 3.1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장 환경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직장 환경의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 【해설】

- 관련 법 규제를 준수하여 노동자의 안전 위생을 배려한 적절한 건물을 설계·건설함과 더불어, 건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 노동자의 연령·성별이나 각자가 가진 특성을 배려하여 쾌적한 직장 환경을 정비해 주십시오. 특히, 신체에 부담이 되는 업무, 소음이나 악취에 노출되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십시오.
- 노동자에 대하여 충분한 수의 청결한 화장실 시설, 안전한 음료수와 식사(식당과 기숙사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휴식 장소, 적절한 조명, 환기 및 공기조절 장치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직장 환경을 정비해 주십시오. 또한 사원 기숙사 등의 거주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시설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으로 운용해 주십시오.

- 적절한 건강 관리를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직업적 질병<sup>\*19</sup>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과중한 노동에 의한 건강 피해 및 정신 건강 부진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3.2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대응**

-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절차 채택, 위험평가(잠재 위험 선별) 실시와 특정된 위험에 대한 대응책 구축, 기계·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사용하는 기계의 안전 대책(물리적인 보호와 인터록<sup>\*20</sup> 등), 방호복과 보호구 제공,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안전 대책에 관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산업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3.3 긴급 시의 대응**

-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사고 등을 상정하고, 긴급 시 대응책을 준비하여 노동자에게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재해와 사고 등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책을 세우고, 직장 내에 철저하게 주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긴급사태 발생 시의 보고 경로와 경보 시스템, 대피 순서 정비, 대피 훈련 실시, 방재 비품·화재탐지기·소화기·장애물이 없는 대피구·외부 통신 수단의 확보 및 복구 계획 책정 등을 추진하여 긴급사태 발생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주십시오.

### **3.4 소통과 교육·훈련**

- **노동자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 위생에 관한 정보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 **【해설】**

- 노동자의 모국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산업재해나 사고를 방지하고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안전 위생에 관한 정보 및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 4. 품질·안전성

### 4.1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품질관리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 【해설】

- 제품이 각국의 법령 등으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제조·판매해 주십시오.
- 제품·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 규제를 준수함과 더불어 스스로 품질 기준, 고객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구조나 관리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정보나 잘못 편집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란,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양·품질·취급 방법 내용이 정확하고, 제품의 함유 물질 정보가 정확한 것을 가리킵니다.

## 5. 책임 있는 광물 조달

### 5.1. 분쟁 광물

- 다이후쿠 그룹에 납품하는 모든 제품, 부품, 재료와 관련하여 분쟁 광물의 사용 방지에 노력해 주십시오.

#### 【해설】

- 분쟁 광물이란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원이나 인권 침해, 부패 행위, 환경 파괴 등에 관계될 우려가 있는 분쟁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을 가리킵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의한 인권 침해나 분쟁에 가담하지 않도록, 공급망에서 위험을 회피, 완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상 광물: 주석(Tin), 탄탈럼(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대상 지역: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 9 개국(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 6. 환경

### 6.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 온실가스\*21 배출량 감축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 【해설】

-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파악 및 감축에 대응해 주십시오.

### 6.2 자원, 에너지, 물의 효율적인 이용 추진

- 자원, 에너지의 유효 활용을 도모함과 더불어 수자원의 보전에 노력해 주십시오.

#### 【해설】

-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절수 등 환경 부하를 저감하는 대책을 실시하여 사업 활동을 통해 환경 배려에 노력해 주십시오.
- 3R 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제조 시의 에너지 절약, 각종 자원의 사용량 삭감(Reduce), 재이용 촉진(Reuse)과 재활용(Recycle)이 용이한 재료 선정 등이 있습니다.
- 재생 재료의 이용 촉진 및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검토 등(Renewable)에도 대응해 주십시오.

### 6.3 자연환경, 생물 다양성의 보전

- 생물 다양성의 보전에 노력함과 더불어 대기·물·토양 등에 대한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해설】

- 자사의 사업 활동이 환경이나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파악하고, 그

정지·방지·경감에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자연 유래의 자원(식물, 동물, 대기, 물, 토양, 광물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당사 그룹에서는 ‘다이후쿠 환경 비전 2050’을 책정하여, 2050년까지 ‘머티어리얼 핸들링 시스템이 환경 부하 제로로 움직이는 세상을 실현합니다.’를 내걸고 있습니다. 당사 그룹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공급망 전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여 본 비전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다이후쿠 환경 비전 2050’ 링크 \(English version\)](#)

#### **6.4 화학물질의 관리**

- 제품 및 제조, 서비스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 **【해설】**

- 법 규제를 준수하여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폐기를 확실하게 실시해 주십시오.

그린 조달 가이드라인에서 당사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그린 조달 가이드라인’ 링크 \(Japanese version only\)](#)

#### **6.5 오염 및 공해 발생의 억제**

- 오염 물질, 폐기물 삭감 등 환경 부하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 **【해설】**

- 사업 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의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지반침하, 악취 등은 현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억제 및 관리하고, 공해 발생 예방에 노력해 주십시오.

## 7. 정보 보안

### 7.1 기밀정보의 유출 방지·개인정보의 관리와 보호

-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위협에 대한 방어책 실시 및 기밀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자사뿐만 아니라 고객과 제삼자에게서 얻은 영업비밀\*22, 노하우, 기밀정보 등을 적절하게 관리·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및 관리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 거래처, 고객, 소비자, 노동자 등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련된 법 규제를 준수함과 더불어 개인정보를 부정, 또는 부당하게 취득, 이용,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보호해 주십시오.

당사에 관한 기밀정보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거래처는 보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거래처용 정보보안 관리 가이드라인 \(English version\)](#)
- > [거래처용 정보보안 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안내 \(English version\)](#)
- > [거래처용 정보보안 관리 가이드라인 체크 시트 \(English version\)](#)

## 8. 업무연속성 계획

### 8.1 업무연속성 계획의 책정과 준비

- 업무연속성을 저해하는 위험의 특정·평가 및 활동 상황을 정리한 업무연속성계획(BCP)\*<sup>23</sup>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설】

- 대규모 자연재해(지진, 해일, 홍수, 호우, 폭설, 토네이도)와 테러·폭동, 감염증, 사고(화재·폭발) 등 업무연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특정·평가해 주십시오.
- 자사 및 자사의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 자사가 공급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활동을 재개하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문서화한 업무연속성계획을 책정해 주십시오.

## 9.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

### 9.1 사회 공헌 활동의 실시

- 자사의 경영 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활동을 자주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 【해설】

- 사업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더불어 각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해 주십시오.

## 10. 적절한 정보 공개

### 10.1 재무·비재무 정보\*<sup>24</sup>의 공개

-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해설】

- 법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 등에 따라 자사의 재무 정보 및 비재무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 기록을 편집하거나 허위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대화 등의 소통 활동을 통해 책임 있는 대응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처>

본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아래의 부서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다이후쿠 SC 이노베이션추진부

이메일 주소: daifuku\_supply\_chain\_management@ha.daifuku.co.jp

개정 이력

개정 연월	판	주된 개정 내용
2017년 4월	제 1 판	구판(CSR 조달 기준)이기 때문에 내용 생략
2024년 1월	제 2 판	'CSR 조달 기준'에서 '지속가능한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전면 개정



## <용어집>

### \*1 지속가능한 사회란: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지구 규모에서 주변 지역에 걸쳐 보전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미래 세대에도 계승할 수 있는 사회.

### \*2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란:

유엔과 민간(기업·단체)이 연계하여 건전한 글로벌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발족한 세계 최대의 지속가능성 구상.

### \*3 ESG 란: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를 고려한 투자 활동이나 경영·사업 활동.

### \*4 SDGs 란:

2015년 9월의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아젠다'에 기재된, 2030년까지 지속가능하며 보다 좋은 세상을 목표로 하는 국제 목표.

### \*5 국제 행동규범이란:

국제관습법\*,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의 원칙 또는 보편적 혹은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부간 합의(조약 및 협정을 포함)에서 도출되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조직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다. 구체적인 예로,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권리장전, 노동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협약\*,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에 의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적인 목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이 있다.

#### \*국제관습법이란:

법으로 인정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 \*세계인권선언이란:

1948년 12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 기준'으로 채택되어,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선언.

#### \*ILO 협약이란:

1998년의 ILO 총회에서 채택되어 회원국은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승인, 강제 노동 철폐, 아동 노동 철폐,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 배제)의 존중, 촉진, 실현을 위한 의무를 결정한 것.

#### \*OECD 란: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칭. 국제경제 전반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기관으로, '세계 최대의 싱크탱크'라고도 불린다.

**\*6 사적독점이란:**

기업이 단독 혹은 다른 기업과 공모하여 경쟁 상대를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신규 참여자를 방해하여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행위.

**\*7 카르텔이란:**

복수의 기업이 서로 연락하여 본래 각 기업이 각각 정해야 할 상품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등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8 입찰 담합이란:**

정부와 지방 공공단체 등이 실시하는 공공 공사나 물품의 공공 조달에 관한 입찰 시,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끼리 사전에 논의하고 수주하는 기업이나 금액 등을 정하여 경쟁하지 않는 행위.

**\*9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거래상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당사자가 다른 한쪽의 거래 상대방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0 반사회적 세력 및 단체란:**

폭력단, 폭력 단원, 총회꾼, 사회 운동 등을 표방하는 무리한 등 폭력과 위력, 사기적인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또는 개인.

**\*11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 활동을 통해 창조된 아이디어나 창작물 가운데 법률로 규정된 권리나 법률로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을 가리킨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등이 해당한다.

**\*12 킥백이란:**

거래처와 공모하여 실제로 증액한 금액을 자사에 지불하게 하고, 해당 증액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13 부정한 이익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비자 취득 등을 이유로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는 경우 등도 해당할 수 있다. 국가·지역의 상관습 범위를 일탈한 접대·증답과 부적절한 개인적 이익이나 부당한 우대 조치를 받기 위해 하는 접대 및 증답도 부정한 이익에 해당한다.

**\*14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이며, 최소한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권리장전에서 표명된 권리
-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협약에서 선언된 기본 권리

**\*15 강제 노동이란:**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 강요되고, 또한 본인이 임의로 희망하지 않은 모든 작업 또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강제 노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 노예 노동
- 채무에 의한 구속(채무 노동)
- 납치 또는 유괴
- 인신매매

- 노동 장소에 감금(형무소 또는 사적인 감금)
- 강제적인 초과 근무
- 여권 등의 신분증이나 노동 허가증 등의 공적 서류를 예탁하여 이직이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16 생활임금이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는 다른 개념이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높다.

**\*17 이주 노동자란:**

자신의 국적이 아닌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일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18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란:**

기업의 인권 침해를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책 마련(보호, 존중, 구제) 등의 3개 축을 내걸고, 모든 국가 및 기업에 그 규모, 업종, 소재지, 소유자, 조직 구조와 관계없이 인권의 보호·존중에 대한 활동을 촉구하는 것.

**\*19 직업적 질병이란:**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0 인터록이란:**

안전제어의 일종으로, 어떤 기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기동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21 온실가스란:**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것. 주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염화불화탄소가 있다.

**\*22 영업비밀이란:**

비밀로 관리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및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이며,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가리킨다.

**\*23 업무연속성계획(BCP)이란:**

자연재해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업 자산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핵심 사업의 계속, 혹은 조기 복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평상시에 해야 할 활동이나 긴급 시 업무연속성을 위한 방법, 수단 등을 사전에 정해 두는 계획.

**\*24 비재무 정보란:**

기업에 관한 정보 가운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등 재무 이외의 정보를 말하며, ESG 정보(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비롯하여 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 지식재산 정보 등을 가리킨다.